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89
----------	-------

발의연월일 : 2026. 8. 21.

발 의 자 : 유영하 · 박덕흠 · 김재섭
김용태 · 유용원 · 이성권
안철수 · 임종득 · 김대식
김상훈 · 박대출 · 조승환
서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사업비의”를 “사업비·운영비의”로 한다.

제3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생 략) ② 국가는 도서관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광역대 표도서관을 설치한 시·도에 대하여 그 <u>사업비의</u> 일부를 보 조할 수 있다.	제27조(광역대표도서관의 건립비 등 보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사업비·운영비의</u> ----- -----.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33조(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 ④ (현 행과 같음) ⑤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u>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공 립 공공도서관 운영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u>